

제과점 식빵도 원산지 표시해야 한다

주요 재료 생산국 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돼

개정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과점 식빵도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식빵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자영제과점을 위해 표시 안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단속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 취재 /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시청 직원이 매장에 들러 식빵을 보더니 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더라구요. 원산지 표시를 안해도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그 공무원은 작년에 원산지 표시 품목에 식빵이 지정된 새로운 시행령이 제정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식빵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겁니까?”

지난 2월 경남 김해시의 한 유통점 내 제과점 점주로부터 전해진 내용이다. 사건의 발단은 식빵의 원산지 미표시를 지적하는 시청 농업경영과 공무원에게 점주가 제과점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대꾸하면서 시작됐다.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오가던 중 업주의 공손치(?) 못한 태도에 심사가 뒤틀린 공무원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며 겁을 주고 적발이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을 하라며 과태료 부과 진술 안내서를 주고 가버린 것이다.

또 다른 사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농수산가공 품 중 식빵, 한과류, 떡류, 채류 등 과자류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임에도 제주 지역 제과점들이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적발시 벌칙 내용을 알리니 회원에게 이를 홍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년 7월에 대한제과협회로 보내왔다. 이 외에도 96년부터 전국의 제과점들로부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작년에 다시 지정돼

식빵의 원산지 표시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농수산물 및 식품 분야에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1995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내용을 추가로 제정해 고시하게 됐다. 그리고 대상 품목에



식빵이 들어감에 따라 베이커리 업계에 원산지 표시 문제가 최초로 대두되게 됐다.

당시에도 식빵의 원산지 표시는 일각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주로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베이커리 업계로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적용 자체가 어리둥절한 것이었다. 또 자영제과점은 휴게음식점영업으로 분류돼 있고, 유통 목적이 아닌 즉석 제조·판매 형태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포장의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마당에 식빵에 사용하는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것은 느닷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문제는 곧 잊혀졌다. 농림부의 법 제정이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혼란을 막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농림부가 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그동안 계도에 주력함으로써 제과점에 대한 단속과 제재는 거의 없어 법 시행조차도 모르는 제과인이 많

았다. 그러던 중 작년에 새로운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99년 12월 농림부가 새롭게 제정·고시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은 대상 품목과 표시 요령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품목으로 떡류나, 한과류, 아이스크림류를 비롯해 식빵이 포함돼 있다. 식빵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제과점이 직접 생산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들 품목을 제과점에 공급하는 업체가 처음부터 원산지 표시를 해 문제가 없다. 다만 이들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소수의 점포만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이 있을 뿐이다.

문제는 식빵이다. 원산지 표시 요령에는 식빵이 포함된 과자류 부문을 '과자류(포장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식빵이라도 포장하지 않은 것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제품의 보존과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모든 제과점에서 포장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식빵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최근 들어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선 공무원의 원산지 표시 요구는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밀가루, 건포도, 버터 등 원산지 표시해야

작년 말 제정된 원산지 표시 요령에 따르면 식빵의 경우 '표시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한가지 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표시 위치는 제품의 옆면과 밑면에 해당하는 포장재 겉면 어디에도 가능하다. 글자 크기는 소설책이나 일반적인 책의 본문이 보통 1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보다 약간 커야 하고 글씨의 색상을 포장재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한가지 색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뒷 페이지 '표시요령' 참조).

원산지 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표시 내용'에 대해서 농림부 식품산업과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식빵의 전체 함량 중 50%가 넘는 것은 그 재료를, 50%가 넘지 않더라도 특정 재료가 제품명으로 사용된 경우는 그 해당 재료의 원산지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식빵의 경우 전체 함량의 50%가 넘는 밀가루와 특정 재료가 제품명으로 사용되는 건포도, 옥수수, 밤, 버터 등만 표기하면 된다.

따라서 식품산업과 관계자는 샌드위치식빵 등은 규정대로 표시 위치와 글자 크기, 글자 색상을 지키고, '표기 내용'은 '밀(미국산)'이라고만 표기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특정 재료



가 제품명으로 사용되는 경우 즉 우유식빵은 '밀가루(미국산) 55%, 우유(국산) 30%', 건포도식빵은 '밀(미국산), 건포도(미국산)', 그리고 버터식빵은 '밀(미국산), 버터(국산)' 식으로 표시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영 제과점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영업의 종류가 다른 데서 연유한다. 즉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의 경우 제품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있다. 식품제조업은 식품위생법상 생산자와 주요 성분, 유통 기한 등의 표시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업체는 어차피 지켜야 하는 표시 기준에 원산지 표시 내용만 추가하면 됐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은 자사 식빵에 버터식빵은 '밀가루(미국산) 52%, 버터(국산) 8%' 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농림부의 지침보다 자세하게 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휴게음식업 영업의 자영 제과점은 식품위생법상 표시 의무가 없었던 데다가, 95년의 원산지 표시제 실시 이후에도 법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점포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과 분쟁 없도록 구체적 표기 필요해

농림부 식품산업과의 이원선씨는 "이번 시행령 제정의 취지가 원산지 표시 정착에 있는 만큼 미국산 밀가루나 건포도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표식만 진열대에 비치해도 공무원들이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베이커리 업계도 정부의 이런 의지를 반영해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원선씨는 무리한 단속을 하지 않을 뿐이지 식빵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식빵의 원산지 표시 요령

● 표시 내용

1. 사용 원료가 총 성분 함량의 50%가 넘는 경우
그 재료를 표시한다
 - ▶ 샌드위치식빵: 밀가루(미국산) 55%
 2. 총 성분 함량에서 50%가 넘지 않아도 특정 재료가 제품명으로 사용된 경우는 밀가루와 함께 그 재료를 표시한다
 - ▶ 우유식빵: 밀가루(미국산) 55%, 우유(국산) 30%
 - ▶ 건포도식빵: 밀가루(미국산) 50%, 건포도(미국산) 15%
 - ▶ 옥수수식빵: 밀가루(미국산) 40%, 옥수수기나루(미국산) 15%
 - ▶ 버터식빵: 밀가루(미국산) 52%, 버터(국산) 8%
 - ▶ 밤식빵: 밀가루(미국산) 45%, 밤(국산) 12%
- * 참고: 위 재료의 함량은 본지가 계산한 것으로 그대로 표기해도 무방할 것임.
옥수수식빵과 버터식빵에 사용된 옥수수기나루나 버터는 수입산일 경우도 있으니 재료의 포장 용기에 적힌 원산지를 참고해 제조국을 표기할 것.

● 표시 방법

앞에서 제시한 재료 원산지 및 함량 즉 '표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포장지 겉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해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한가지 색으로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또는 전자 저울에 의한 라벨 등을 이용해 표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른 우유식빵과 건포도식빵을 예로 들어 표시 방법 및 글자 크기를 그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우유식빵
밀가루(미국산) 55%, 우유(국산) 30%
- ▶ 건포도식빵
밀가루(미국산) 50%, 건포도(미국산) 15%

* 위 글자는 13포인트이므로 표시할 때 이와 같거나 이보다 크면 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 일반 기준 부과 범위 :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그 횟수를 참작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 범위 안에서 이를 기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증 부과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개별 기준 부과 범위

수거,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00만원

●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

-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물량에 적발 당일의 국산 도매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기준 도매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업소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 금액 최소 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해 만원 단위로 부과되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을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소 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부과한다.

농림부 관계자의 설명대로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다. 또 농림부가 원산지 표시 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무리한 단속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내 미국산 밀가루와 건포도 등을 사용한다는 표식만 있어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제는 규정대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일선 공무원이 원칙대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적발을 당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적발된 물량에 적발 당일의 국산 도매 가격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는 원산지 미표시로 부과된 금액의 1/2을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이다. 따라서 자영 제과점은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때마다 대략 5~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제과점으로서는 이번 시행령이 신경 쓰이는 일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이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는 포장업체에 의뢰해 인쇄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다. 다만 표시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식빵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앞에서 제시한 대로 밀의 생산 국가와 특정 재료가 제품명으로 사용된 경우 건포도, 옥수수, 버터, 밤 등의 원산지를 표기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원산지 표시를 해온 프랜차이즈 업체는 밀가루와 건포도, 버터 등 특정 재료의 원산지를 제조국과 사용 비율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공무원들이 자영 제과점도 이처럼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표기한 것이고, 공무원도 정확한 표기 방법을 잘못 인식한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는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진위가 가려지는 동안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업체처럼 해당 재료의 생산국과 사용률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박스 기사 '표시 내용 안내' 참조).

현재 실제적인 단속은 없는 편이지만 원산지 표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영 제과점은 새로 구입하는 포장지부터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고 표시 내용도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